

+ 피보험자의 자격

이 보험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5인 이상의 구성이 있는 제 3종 단체로서 동일한 신용제공기관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 집단 또는 동일한 신용보증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 채무자 집단을 말합니다.

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위 가입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,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. 금전소비자대차계약이란, 돈을 빌려줄 것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사람은 빌린 돈을 일정 기일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.

+ 보험금 지급에 따른 계약의 소멸

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함에 따라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채무액(보장실익)이 모두 상환됩니다. 따라서,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어느 한 가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.

+ 계약 전 알릴 의무

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.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+ 보험수익자의 지정

이 계약의 채무상당액 이내에 대한 보험금의 보험수익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신용제공기관(물품 또는 금전 등의 신용을 제공하는 기관) 또는 신용보증기관(신용제공기관으로부터 신용을 제공 받는 채무자 집단의 채무액을 보증하는 기관)으로 합니다.

+ 예금자보호 안내

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원"이며,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 (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.)

본 자료는 요약된 내용입니다. 상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상품공시실에서 사업방법서 및 약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.